

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

제정 2019년 11월 8일 조례 제1756호
일부개정 2020년 12월 11일 조례 제1861호
전부개정 2022년 12월 22일 조례 제2016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5조의2 및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오산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) ①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오산시 적극행정 실행계획(이하 “실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추진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.

제3조(적극행정 관련 교육 등) ① 시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1. 직장교육 형태의 집합교육
2.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
3. 온라인 교육
4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

② 시장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관련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4조(오산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) ① 오산시 적극행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.

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

- ②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- 1. 오산시공무원
 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
 - 가. 오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업무에 대한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나.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 관련 부서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제5조(위촉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위촉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
- 5. 위원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.

제8조(회의의 소집 등) ① 위원회의 회의(이하 “회의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 - 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 다만,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제9조(간사)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) ① 위원회는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심의 사항과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경우 제5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시장, 공무원 또는 제11조에 따라 자문을 요청한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 결과 면책 건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,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및 「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」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서를 영 제15조제6항에 따라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해야 한다.

제11조(사전컨설팅 관련 심의) 시의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사항을 위원회에 자문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 요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.

제12조(위원회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등) ① 공무원은 영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 제시 요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공무원이 영 제17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영 제12조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한 경우 적극행정국민신청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.

제13조(면책 건의) 공무원이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요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면책 건의 요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.

제14조(수당) 시장은 위원회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제15조(포상) 시장은 적극행정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 등에게 「오산시포상조

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

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6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 〈2022. 12. 22 조례 제2016호 전부개정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」 제3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극행정 추진 사항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

■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【별지 제4호서식】

안건 심의서

1. 심의·의결 안건

안건번호	안 건 명

2. 심의사항

핵심심의내용	심의의견	
	가(可)	부(否)

※ 심의의견은 안건 내용을 참고하여 可, 否 란에 “○”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심의의견(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)

--

0000. 00. 00 .

위원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■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【별지 제5호서식】

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

안건번호		심의일자	
안건명			

위 안건에 대하여 ○○○○년 제○○회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다 음

심의 결과 :

심의 내용 :

년 월 일

오산시 적극행정위원회

위원장 서명 또는 인

■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【별지 제6호서식】

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

(적극행정면책을 건의하는 경우)

안건번호		심의일자	
요청인	소속 기관 및 부서	직급 및 성명(연락처)	
감사원 감사사항명			

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0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위 요청인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에 대한 ○○○○년 제○○회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다 음

심의 결과 :

심의 내용 :

1.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
2.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
3. 고의·중과실 존재 여부
 - 1)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
 - 2)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존재 여부
4. 종합 의견

년 월 일

오산시 적극행정위원회

위원장

서명 또는 인